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60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이춘석 · 안호영 · 윤준병  
이연희 · 홍기원 · 황명선  
양부남 · 서삼석 · 이성운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 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이미지,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임.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등록·육성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및 부당한 예약 취소·부정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로 하여금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취소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86조제2항).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광숙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 요금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광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관광숙박 요금을 사업장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숙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관광숙박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행위

제8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숙박 요금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 사항)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관광숙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 요금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p> <p>③ <u>관광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관광숙박 요금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④ <u>관광숙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u>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u></p> <p>2. <u>제2항에 따라 신고한 관광숙박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행위</u></p>

제8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 6. (생략)

③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